

의안번호	2202854
의 퇴 인	서삼석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7.
추 계 번호	24E283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대상에 천일염생산업 포함 및
비과세 한도 삭제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의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천일염생산업을 비과세 소득 대상에 추가하고 어로어업 및 양식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(연 5천만원)를 삭제함에 따라, 소득세는 2026년 230억원, 2030년 25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,202억원(연평균 24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어업 관련 비과세 확대 (안 제12조 제2호 사목)	-230	-235	-240	-246	-251	-1,202	-240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	비고
1	안 제12조 제2호 사목 (비과세소득)	○ 비과세 대상 소득에 ‘천일염생산업’ 추가 ○ 어로어업소득(연근해어업·내수면어업 등) 전체에 대해 비과세 - (현행) 비과세 한도 연 5천만원 - (개정안) 비과세 한도 삭제(전액 비과세)			
			현행	개정안	
		대상	어로어업소득 (원양어업 제외) 양식어업소득	(현행) + ‘천일염생산업’ 추가	
		비과세 한도	5천만원	한도 없음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2조 제2호 사목 (비과세소득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하며
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산출
 - 2025년 귀속 어로어업 소득 등에 대한 세수효과는 종합소득 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년 발생할 것으로 가정
- 2022년 귀속 천일염 생산 채취업 및 어로어업 등 사업소득 신고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을 추계
 - (천일염생산업 소득 비과세)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2년 귀속 천일염 생산 채취업 사업소득 신고자료를 바탕으로, 소득구간별로 종합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천일염생산업 비과세에 따른 세수감소분 추계
 - (어로어업 등 소득 비과세 한도 삭제)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2년 귀속 어로어업(원양어업 제외) 및 양식어업 소득을 바탕으로, 소득구간별로 비과세 한도 삭제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
 - 소득구간별로 현행 기준(비과세 한도 연 5천만원)과 개정안 기준(전액 비과세)에 따라 변화하는 1인당 소득금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세수효과를 계산한 후, 신고건수를 적용하여 전체 세수효과 산출
 - 2021~2023년 어가소득 연평균 증가율 2.3%에 따라 향후 감면액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
 - 「농가 및 어가경제조사(통계청)」 상 '21~'23년 어가소득 연평균 증가율 2.3%
- 비과세 대상소득 확대 및 한도 삭제 등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비과세 소득대상에 '천일염생산업' 추가

- (천일염생산업 비과세에 따른 감면액 추계) 소득구간별로 종합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천일염생산업 사업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 추계

- 국세청이 제출한 2022년 귀속 천일염 생산 채취업 사업소득 자료를 바탕으로, 소득구간별로 비과세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
- 천일염생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함에 따라 2022년 소득기준 9.6억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

[표 2] 천일염 생산 채취업 사업소득 비과세에 따른 감면액 추정(2022년 귀속기준)
(단위: 백만원)

소득금액 구간	소득금액	실효세율 ¹⁾	감면액 증가
	A	B	C = A × B
0~1천만원	643	1.4%	9.1
1~2천만원	1,341	2.2%	30.0
2~4천만원	2,214	4.5%	99.7
4~5천만원	886	6.9%	60.8
5~6천만원	815	7.9%	64.6
6천만원~1억원	915	10.8%	98.8
1억원 초과	2,330	25.7%	599.6
합계	9,145		962.5

주: 1) 2022년 귀속 기준 소득규모별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감면액이 '21~'23년 어가소득 연평균 증가율(2.3%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- 「농가 및 어가경제조사(통계청)」 상 '21~'23년 어가소득 연평균 증가율 2.3%

[표 3] 천일염생산업 비과세에 따른 세수효과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천일염생산업 비과세에 따른 세수효과	-10	-11	-11	-11	-11

주.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어로어업·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삭제

- (어로어업 소득 등 비과세 한도 삭제에 따른 감면액 추계) 비과세 한도 삭제 전/후 1인당 소득금액 변화에 실효세율을 적용해 소득구간별 1인당 세수효과를 산출 후, 신고건수를 적용하여 전체 세수효과 추계
 - 국세청이 제출한 2022년 귀속 어로어업(원양어업 제외) 및 양식어업 소득을 바탕으로, 소득구간별로 비과세 한도 삭제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-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삭제함에 따라 2022년 소득기준 205억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

[표 4] 어로어업 및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 추정

(단위: 백만원)

소득규모	신고건수	1인당 총소득금액	1인당 비과세소득		1인당 소득금액 변화	구간별 실효세율 ²⁾	1인당 세수효과	전체 세수효과
			현행	개정안 ¹⁾				
	A	B	C = min[50,B]	D = B	E = C - D	F	G = E × F	G × A
2천만원 이하	9,182	0.1	0.1	0.1	-	1.9%	-	
2~4천만원	975	29	28.8	28.8	-	4.5%	-	
4~5천만원	265	45	45.0	45.0	-	6.9%	-	
5~6천만원	256	55	50.0	54.8	-5	7.9%	-0.4	-97
6~8천만원	326	69	50.0	69.4	-19	9.8%	-2	-621
8천만원~1억원	224	90	50.0	89.9	-40	12.0%	-5	-1,077
1~2억원	414	134	50.0	134.2	-84	17.1%	-14	-5,946
2~3억원	93	239	50.0	238.7	-189	23.0%	-43	-4,029
3~5억원	48	373	50.0	372.6	-323	26.6%	-86	-4,116
5억원 초과	20	731	50.0	731.5	-681	34.0%	-232	-4,640
합계	11,803							-20,526

주: 1)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1인당 총소득금액 전액이 비과세 대상 소득

2) 2022년 귀속 기준 소득규모별 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 비율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감면액이 '21~'23년 어가소득 연평균 증가율(2.3%)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- 「농가 및 어가경제조사(통계청)」 상 '21~'23년 어가소득 연평균 증가율 2.3%

[표 5] 어로어업·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삭제에 따른 세수효과: 2026~2030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어로어업 소득 등 비과세 한도 삭제에 따른 세수효과	-219	-224	-229	-235	-240

주.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다. 추계결과

- 천일염생산업을 비과세 소득 대상에 추가하고 어로어업 및 양식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(연 5천만원)를 삭제함에 따라, 소득세는 2026년 230억원, 2030년 25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,202억원(연평균 24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							(단위: 억원)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어업 관련 비과세 확대 (안 제12조 제2호 사목)	-230	-235	-240	-246	-251	-1,202	-240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